

첨부서류	1. 신체검사서(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하지 아니합니다) 2.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사진(가로 2.5cm, 세로 3cm)	수수료 3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◆ 도검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기존 허가 도검류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증
 - 나. 소지 허가된 도검류로서 상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도검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
 - 다. 수입 또는 양도 도검류의 경우에는 수입면장
 - 라.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

처리절차

